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15-6
------------------	------

제출년월일 : 2015. 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조사업의 공모대상과 보조금의 교부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 규정(안 제4조)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2016년 회계부터 적용)
-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

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6조)

- 15명 이내 구성(당연직 :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교육국장)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 임기 3년(1회 연임 가능)

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규정(안 제7조)

- 예산편성 사항, 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사항, 보조사업자와 재원분담사항, 공모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사항, 사업유지여부 결정 등

라. 지방보조금 교부 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14조~제20조)

- 보조사업 공고, 신청자 결정, 교부조건과 교부방법에 관하여 규정

마. 지방보조사업 점검 및 감독, 정산에 관하여 규정(안 제21조~제24조)

-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명령과 사업을 일시정지할 수 있음
-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한 정산검사와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음

바.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에 관하여 규정(안 제26조)

- 구청장은 매년 지방보조사업을 성과평가 후 예산편성에 반영
-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지방보조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함

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 폐지(안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제32조의10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규제여부 : 정부나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지원·육성 등의 차원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및 선정기준, 보조금 지원 후의 의무사항 및 감독관련 규정은 규제에 해당되지 않음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4. 11. 20. ~ 12. 10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 권고사항 있음
- 평가기준 : 이해충돌 가능성
 - 개선사항 :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및 위원의 회피 의무 불이행 등과 같은 위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사후적 통제 장치(해촉) 마련
 - 조치사항 : 권고사항 반영(제9조 신설)
- 3)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동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방보조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5. 구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직 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안전행정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교육국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예산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의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구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법 제32조의7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에 안건을 부치고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

② 구청장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금을 교부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

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지방보조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생기게 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6조(교부결정)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지방보조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7조(교부조건)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 총 경비에 대한 자기자금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의 완료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교부결정 통지)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면서 제17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자에게 발급한다.

②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공공기관에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0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 또는 경비배분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2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

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 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 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는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지방보조금 을 감액할 수 있다.

제23조(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제22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 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4조(감독 등)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5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6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효과가 미흡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하여 실무평가반을 구성·운영 할 수 있고,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

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3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

요재산에 대하여는 장부에 현재액과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그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범 제32조의9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구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30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지방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된 지방보조금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

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및 제11조”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